

9-72 원격평생교육원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

2013. 2. 1. 제정

2019. 6.24. 개정

주무부서 : 사회교육처 학사운영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원격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23조에 의거 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법령, 교외장학재단 및 관계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3조(장학금액) ① 교육원의 장학금 총액은 매 학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정한다.

② 장학금 지급 대상자별 지급액은 교육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장학금의 구분)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교내장학금은 교비에 의해 편성된 장학금을 말한다.

③ 교외장학금은 외부장학재단, 공공기관 및 기타단체에 의한 재원으로 편성되고 지급 대상이 지정된 장학금을 말한다.

제2장 장학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5조(지급대상) 본 시행세칙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제목개정 2019. 6.24>

1. 교육원 능력개발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
2. 교육원 학점은행제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
3. 기타 사회교육처장(이하 “처장” 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장학위원회에서 허가하는 자

제6조(지급기준) ① 교내장학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목개정 2019. 6.24>

1. 입학성적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2. 모범적인 품행과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경우 <개정 2019. 6.24>

3. 학교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령 및 협약 등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5. 해당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경우
 7. 기타 처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 ② 장학금 지급은 학습비에 한하며, 실습비는 제외한다.
- ③ 교외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금 출연자의 출연목적에 적합한 경우로 하며, 지급방법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 ④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장이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장학위원회

제7조(장학위원회) ① 교육원의 장학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처장
 2. 위원 : 처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 심의
 2. 장학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심의
 3. 기타 장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8조(의결) 장학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장학금 신청과 지급

제9조(공지 및 신청) ① 장학금 지급 규정(시행세칙), 장학금의 종류, 신청기간 및 방법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목개정 및 조항신설 2019. 6.24>

② 장학금은 매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중에 장학금 신청서(별첨 서식1 또는 서식2)와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대상이 확정된 경우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6.24>

제10조(지급기간) 장학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기에 한하여 지급하며, 해당 학기의 등록을 마쳐야 유효하다. <제목개정 2019. 6.24>

제11조(지급방법) 장학금은 학습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감면고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습비를 기 납부한 경우 또는 특정 장학금에 경우에는 환불처리 할 수 있다. <제목개정 및 개정 2019. 6.24>

제12조(중복지급 금지 및 예외기준) ① 장학금의 중복지급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점은행제과정에 한하여 학습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제목개정 및 개정 2019. 6.24>

② 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비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24>

1. 교내 각종 근로 장학금을 수혜 받아 학습비를 초과한 경우 <개정 2019. 6.24>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19. 6.24>

제13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제목개정 2019. 6.24>

1. 학칙 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 <제목개정 2019. 6.24>
2.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학업성적이 장학생 선발기준에 미달된 자
4.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자 <신설 2019. 6.24>
5. 기타 본 규정에 위반된 자 <신설 2019. 6.24>

제14조(지급 중지 및 회수) ①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자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6.24>

② 당해 학기에 장학금 수혜 후 환불(학습포기)의 경우에는 능력개발과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학점은행제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지급된 장학금에 대하여 회수한다.

③ 지급 중지 또는 회수된 장학금은 재등록 시에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9. 6.24]

제5장 능력개발과정 장학금

제15조(장학금의 종류) 제5조 제1호에 의거 능력개발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6.24>

1. 가족장학금
2. <삭제 2019. 6.24>
3. 근로장학금
4. 기금장학금
5. 부속기관장학금
6. <삭제 2019. 6.24>
7. 직계장학금
8. 특별장학금

제16조(가족장학금) 가족이 2명 이상 능력개발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습비가 낮은 1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지급기준 : 직전학기 출석률 70% 이상인 자(단, 1차 학기는 출석률 미반영)
2. 지급액 : 학습비의 30% <개정 2019. 6.24>
3. 지급범위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4. 지급기간 : 가족의 동시 재학기간
5.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17조(공로직계장학금) <삭제 2019. 6.24>

제18조(근로장학금) ① 일정시간의 근로를 통하여 교육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액 및 범위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학습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24>

③ 근로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기금장학금) ① 각종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장학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②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하여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부속기관장학금)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적용대상 :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중앙대학교 병원 직원
2. 지급범위 : 과정별 수강인원의 10% 이내
3. 지급기준 : 직전학기 출석률 70% 이상인 자(단, 1차 학기는 출석률 미반영)
4. 지급액 : 학습비의 30% <개정 2019. 6.24>
5. 지급기한 : 재학기간 <개정 2019. 6.24>
6. 제출서류
 - 가. 재직증명서
 - 나. 가족관계증명서

제21조(중앙사랑장학금) <삭제 2019. 6.24>

제22조(직계장학금) 중앙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법인 임직원 및 동기관에서 정년퇴직한 자의 직계자녀 또는 배우자, 본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적용대상 : 전임교원 및 직원(비정규직 포함)
2. 지급범위 : 과정별 수강인원의 10% 이내
3. 지급기준 : 직전학기 출석률 70% 이상인 자(단, 1차 학기는 출석률 미반영)
4. 지급액 : 학습비의 50% <개정 2019. 6.24>
5. 지급기한 : 재학기간
6. 제출서류
 - 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나. 가족관계증명서

제23조(특별장학금) 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자, 특별강좌 수강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 및 출석이 성실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학점은행제과정 장학금<개정 2017. 3. 31.>

제24조(장학금의 종류) 제5조 제2호에 의거 학점은행제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장학금
2. <삭제 2019. 6.24>
3. 근로장학금
4. 기금장학금
5. 보훈장학금
6. 부속기관장학금
7. 생활복지장학금 <신설 2017.3.31.>
8. 성적우수장학금
9. 재수강장학금
10. <삭제 2019. 6.24>
11. 직계장학금
12. 특별장학금

제25조(가족장학금) 가족이 2명 이상 학점은행제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습비가 낮은 1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지급기준 : 직전학기 평점 2.5이상(단,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개정 2019. 6.24>
2. 지급범위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3. 지급액 : 학습비의 35%
4. 지급기간 : 가족의 동시 재학기간
5.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26조(공로직계장학금) <삭제 2019. 6.24>

제27조(근로장학금) ① 일정시간의 근로를 통하여 교육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액 및 범위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학습비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24>

③ 근로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기금장학금) ① 각종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장학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②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기부자의 의지를 최우선하여 반영하되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보훈장학금)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손·자녀에게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포함)

1.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가. 보훈 본인 및 배우자 : 성적 미반영

나. 직계 손·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 직전학기 평균 70점이상(단,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개정 2019. 6.24>

2. 지급액 : 학습비 전액

3. 제출서류

가.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손·자녀)

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다.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북한이탈주민) <개정 2019. 6.24>

제30조(부속기관장학금)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적용대상 :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중앙대학교 병원 직원

2. 지급범위 : 과정별 수강인원의 10% 이내

3. 지급기준 :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단,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개정 2019. 6.24>

4. 지급액

가. 본인 : 학습비의 50%

나. 배우자 및 직계자녀 : 학습비의 30%

5. 지급기한 : 재학기간 <개정 2019. 6.24>

6. 제출서류

가. 재직증명서

나. 가족관계증명서

제31조(생활복지장학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그 자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 및 제출서류는 「별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증명서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 6.24>

1. <삭제 2019. 6.24>
2. 지급기준 :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단,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개정 2019. 6.24>
3. 지급액
 - 가. 기초생활수급자 : 학습비의 50%
 - 나. 차상위 계층 : 학습비의 30%
4. 지급기간 : 재학기간
5. 제출서류: [별표]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증명서 참조 <개정 2019. 6.24>

제32조(성적우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의 지급대상, 선발기준, 지급액, 선발조건, 지급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지급대상 : 5과목 이상 수강자
- ② 장학금 선발기준 및 지급액 <개정 2019. 6.24>

선발기준	지급액
상위성적 10%이내인 자	학습비의 70%
상위성적 30%이내인 자	학습비의 50%
상위성적 50%이내인 자	학습비의 30%

③ 선발조건

1. 5과목 이상 수강자가 2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수강과목의 (상대평가로 환산된) 총점평균으로 순으로 선정한다.
2. 총점평균이 같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 가. 과목수가 많은 자를 우선 함
 - 나. (상대평가로 환산된) 평균평점이 높은 자를 우선 함
 - 다. (상대평가로 환산된) 중간 및 기말성적이 높은 자를 우선 함
 - 라. 총점평균과 평균평점의 정의 및 산출 근거는 학점은행제과정 운영지침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24>
3. 성적우수 장학대상자 인원은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지급방법 : 매 개강 차수별로 성적우수 장학대상자를 정하고, 환불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33조(재수강장학금) 재수강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1. 지급대상 : 학점은행제과정 수강자로서 동일과목을 재수강하는 자 <개정 2019.

6.24>

2. 지급기준 : 수강학기 기준으로 2년 이내
3. 지급액 : 학습비의 50%

제34조(중앙사랑장학금) <삭제 2019. 6.24>

제35조(직계장학금) 중앙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법인 임직원 및 동기관에서 정년퇴직한 자의 직계자녀 또는 배우자, 본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적용대상 : 전임교원 및 직원(비정규직 포함)
2. 지급범위 : 과정별 수강인원의 10% 이내
3. 지급기준 :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단, 1차 학기는 성적 미반영) <개정 2019. 6.24>
4. 지급액 : 학습비의 70% <개정 2019. 6.24>
5. 지급기한 : 재학기간
6. 제출서류
 - 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나. 가족관계증명서

제36조(특별장학금) 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기타) 본 시행세칙에 정하지 않은 장학에 관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3.2.1.)

(시행일) 본 내규는 2013년 2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02.28.)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7.20.)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04.13.)

제1조 본 시행세칙은 ‘원격평생교육원 장학금 지급 내규’를 시행세칙으로 상위조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주무부서를 ‘사회교육처 학사운영팀’으로 변경하여 관리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본 개정 시행세칙과 상이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2017학년도 1학기까지 종전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9. 6.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증명서(제31조제1항제5호 관련)

구분	자격증	비고	발급처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포함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차상위 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